제 5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10조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제11조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 **제12조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진행하며 이 기간 내에서 초과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다

인정서상에 유효기간이 2~3년일 경우 인정서상의 유효기간으로 결정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지속적으로 이용을 원할 경우 계약서를 재 작성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함.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장기요양보험 수가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고지하고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장기요양급여(방문목욕) 표준약관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 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제13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 **제14조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2026년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수가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비고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부담대상	수 가 (단위 : 원 / 회당)									
공단부담액	시간 구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비고
	일반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본인부담액	일반	2,618	3,798	5,118	6,515	7,596	8,553	9,530	10,512	
	경감 (40%) 본인부담 9%	1,570	2,278	3,070	3,908	4,557	5,131	5,717	6,307	
	경감(60%)본인부담 6%	1,047	1,519	2,047	2,605	3,038	3,421	3,811	4,204	

방문요양급여비용1 (방문당)

등급	급여비용	이용횟수	총급여비용	15%	9%	6%
30분당	17,450	20	349,000	52,350	31,410	20,940
60분당	25,320	20	506,400	75,960	45,570	30,380
90분당	34,120	31	1,057,720	158,650	95,190	63,460
120분당	43,430	25	1,085,750	162,860	97,710	65,140
150분당	50,640	25	1,266,000	189,900	113,940	75,960
180분당	57.020	25	1,425,500	213,820	128,290	85,530
210분당	63,530	25	1,588,250	238,230	142,940	95,290
240분당	70,080	25	1,752,000	262,800	157,680	105,120

가족요양 60분(20일)　　가족요양90분 (31일)

분류	20일	30일	31일
급여비용	506,400	1,023,600	1,057,720
본인부담금 (15%)	75,960	153,540	158,650

방문요양 급여비용 2 (방문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	공휴일	일요일	월 이용 시간				본인부담금		
			50%+	30%+	월한도	이용횟수	총급여비용	남은비용	15%	9%	6%
1등급	120분	43,430	65,140	56,450	2,512,900	31	1,346,330	1,166,570	201,940	121,160	80,770
	150분	50,640	75,960	65,830	2,512,900	31	1,569,840	943,060	235,470	141,280	94,190
	180분	57,020	85,530	74,120	2,512,900	31	1,767,620	745,280	265,140	159,080	106,050
	210분	36,530	95,290	82,580	2,512,900	31	1,969,430	543,470	295,410	177,240	118,160
	240분	70,080	105,120	91,100	2,512,900	31	2,172,480	340.420	325,870	195,520	130,340
2등급	120분	43,430	65,140	56,450	2,331,200	31	1,346,330	984.870	201,940	121,160	80,770
	150분	50,640	75,960	65,830	2,331,200	31	1,569,840	761,360	235,470	141,280	94,190
	180분	57,020	85,530	74,120	2,331.200	31	1,767,620	563,580	265,410	159,080	106,050
	210분	63,530	95,290	82,580	2,331.200	31	1,969,430	361,770	295,410	177,240	118,160
	240분	70,080	105,120	91,100	2,331,200	30	2,102,400	228,800	315,360	189,210	126,140
3등급	120분	43,430	65,140	56,450	1,528,200	31	1,346,330	181.870	201,940	121,160	80,770
	150분	50,640	75,960	65,830	1,528,200	30	1,519,200	9,000	227,880	136,720	91,150
	180분	57,020	85,530	74,120	1,528,200	26	1,482,520	45,680	222,370	133,420	88,950
	210분	63,530	95,290	82,580	1,528,200	24	1,524,720	3,480	228,700	137,220	91,480
	240분	70,080	105,120	91,100	1,528,200	21	1,471,680	56,520	220,750	132,450	88,300
4등급	120분	43,430	65,140	56,450	1,409,700	31	1,346,330	63,370	201,940	121,160	80,770
	150분	50,640	75,960	65,830	1,409.700	27	1,367,280	42,420	205,090	123,050	82,030
	180분	57,020	85,530	74,120	1,409,700	24	1,368,480	14,220	205,270	123,160	82,100
	210분	63,530	95,290	82,580	1,409,700	22	1,397,660	12,040	209,640	125,780	83,850
	240분	70,080	105,120	91,100	1,409.700	20	1,401,600	8,100	210,240	126,140	84,090
5등급	90분	34,120	51,180	44,350	1,068,500	31	1,057,720	10,780	158,650	95,190	63,460
	120분	43,430	65,140	56,450	1,208,900	27	1,172,610	36,290	175,890	105,530	70,350
	150분	50,640	75,960	65,830	1,208,900	23	1,164,720	44,180	174,700	104,820	69,880
	180분	57,020	85,530	74,120	1,208,900	21	1,197,420	11,480	179,610	107,760	71,840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 22시 ~06시 :30%가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 일요일은 30% 가산

○ 유급 휴일 및 근로자의 날 50%

* 서비스 비용 산정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 정서 및 신체활동,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 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1]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요양)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소득수준에 따라 경감 40%, 경감 60%)

▶ 경감 40%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경감 60%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⑤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 **제15조 (계약의 기간 및 해제)** 기관과 수급자와의 계약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내의 기간에 계약을 실시하고, 인정서의 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관계약기간의 끝으로 한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